

##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이천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2002년 7 월 3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,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### 1. 제안이유

- 구체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축방역 전담 인력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 이천시 정원을 증원하며,
- 정원 초과 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한 대통령령이 개정. 공포됨에 따라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 경과 조치를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코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집행기관의 정원 "738"을 "739"로 하여 1명을 증원하며 (수의6급1명)
- 총계란에 "754"를 "755"로 함
- 정원조례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 4명(고용직)의 별도 정원 인정 기간을 2003년2월28일 까지 규정.

### 3. 법적근거

- 행자부 정. 현원 관리 지침(2002.6.8) 및 가축방역 인력 보강 지침(2002.6.19)

### 4. 검토의견

○ 행자부의 관련 지침 시달에 의거, 가축방역체제 강화를 위하여 수의직 1명을 증원하고, 이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 4명을 2003년 2월 28일 까지 초과 정원으로 인정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부칙에 정하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.